[일련번호: 1]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휴가사용 및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 사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0. 10 20. 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나)’에 따르면 원격지간(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 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시행 2018. 7. 1.]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24시간 전일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 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근부서의 장은 출동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공가를 사용할 경우, 공가 사유 및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만 공가를 사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4시간 미만 소요될 경우 인사발령일 전일(前日)이 24시간 전일(全日) 또는 3조 교대제 야간근무자의 경우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주간 근무 또는 비번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만큼 조퇴(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00. 0.~현재) 동안 ☆☆소방서 휴가등 복무관리현황을

---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렴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확인해 본 바 아래 [표 1] “공사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과 같이 총 12명이 부당하게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1>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사용 현황

순번	대상자	공가 사용일	휴가 일수	휴가 사유	연가보상비 환수		
					서식입력	환수대상	금액(원)
1	소방☆☆☆☆	2020.07.01. (18:00~09:00)	1.25일	정기인사로 인한 근무조 변경	'주', '야공'	1일	50,710
2	소방☆☆☆☆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가	'주', '야공'	1일	44,150
3	소방☆☆☆☆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가	'주', '야공'	1일	121,100
4	소방☆☆☆☆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가	'주', '야공'	1일	80,550
5	소방☆☆☆☆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가	'주', '야공'	1일	63,070
6	소방☆☆☆☆	2021.01.01.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가	'주'	-	
7	소방☆☆☆☆	2021.06.02. (18:00~09:00)	1.25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야간 공가	'야공'	1일	63,070
8	소방☆☆☆☆	2021.07.04. (18:00~09:00)	1.25일	인사이동에 따른 타서 전출로 인한 야간공가	'주', '야공'	1일	119,080
9	소방☆☆☆☆	2022.07.10. (05:30~09:00)	1일 (03:15)	정기 인사발령 전출자 복무처리로 인한 공가	'야공'	근무상황 수정	
계							**541,73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연가가산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시행 2020. 10. 20. 인사혁신처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연가 일수의 가산’에서는 연도 중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3]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 일수를 산정할 때 연가를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소방서 종합감사대상기간(2000. 0.~현재) 연가 가산내역을 확인한 바 아래 <표3>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과 같이 총 10명이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미사용 또는 병가미사용 사유로 연가를 가산한 사실이 있다.

<표3> 연가가산 부적정 현황

순번	대상자	연가가산 미적용 사유	연가산정				연가사용				연가보상비 회수	
			연도	법정	가산	계	사용			미 사용	대상	금액 (원)
							사용	보상	저축			
1	소방☆ ☆☆☆	육아휴직 (2019.06.30.~ 2020.05.31.)	2021	21일	1일	22일	15일 00:15	6일	07:45	0일	1일	83,090

3)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2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5일	1일	16일	6일	4일	2일	0일	1일	53,700
3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5일	1일	16일	13일 05:30	2일	02:30	0일	1일	53,700
4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5일	1일	16일	6일 06:45	9일	01:15	0일	1일	53,700
5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5일	1일	16일	10일 02:00		5일 06:00	0일	1일	53,700
6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5일	1일	16일	6일 04:00	9일	04:00	0일	1일	53,700
7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20일	1일	21일	13일 01:15	7일	06:45	0일	1일	61,240
8	소방☆ ☆☆☆	신규임용 (2020.03.16.)	2021	12일	1일	13일	10일 00:45	2일	07:15	0일	1일	51,220
9	소방☆ ☆☆☆	신규임용 (2020.08.20.)	2021	15일	1일	16일	7일 04:15	8일	03:45	0일	1일	53,700
10	소방☆ ☆☆☆	신규임용 (2020.08.20.)	2021	15일	1일	16일	9일	7일		0일	1일	53,700
계(10명)											10일	**571,45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및 표준인사시스템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공가대상이 아님에도 공가를 사용한 9명 중 2022년 행위자 1명에 대한 복무사항을 연가로 수정 반영하시고, 2021년 이전 행위자 8명은 연가보상비 541,730원을 회수하시고, 연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하여 사용한 10명의 경우 연가보상비 571,45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급량비, 여비 등 지출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와 급여, 수당, 급량비 및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 지급 등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급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9. 4. 16. 대통령령]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17. 7. 17. 대통령령]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제공 대상자가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하고,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받은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가 출장종료 후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출장여비의 식비와 매식비를 중복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00. 0.~현재) 동안 ☆☆소방서로부터 급량비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과 같이 총 10명에게 관외출장에 따른 식비 20,000원이 포함된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야근 매식비 121,000원을 중복 지급하였다.

<표1> 관외출장여비와 매식비 중복지급 현황

순번	대상자	일자	출장내역				매식비 집행 (반납)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비		
					수령일	금액	
1	소방☆☆☆☆	2020.03.12.	강릉시	☆☆안전센터 가루수령	2020.03.13.	35,500	6,500
		2020.05.14.	원주시	현장대응부서 집기비품 구매관련 시장조사	2020.05.15.	30,000	6,000
		2020.05.18.	강릉시	부서운영물품 구입	2020.05.19.	36,100	7,000
		2020.05.19.	원주시	소방청사 신증축 심의회 참석	2020.05.26.	58,000	6,500
		2020.05.21.	강릉시	현장대응부서 집기부품 구매	2020.05.26.	33,500	6,000
		2020.05.26.	춘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2020.06.27.	71,800	6,000
2	소방☆☆☆☆	2020.05.14.	원주시	현장대응부서 집기비품 구매관련 시장조사	2020.05.15.	30,000	6,000
		2020.05.18.	강릉시	부서운영물품 구입	2020.05.19.	33,300	6,000
3	소방☆☆☆☆	2020.05.21.	원주시	의무소방원 병력인수	2020.05.26.	58,000	6,000
4	소방☆☆☆☆	2020.07.23.	횡성군	제67개 신규 의무소방원 인수	2020.07.28.	57,400	6,000
	소방☆☆☆☆	2021.05.22.	원주시	직원 사망에 따른 장례 지원	2021.05.26.	58,000	7,000
5	소방☆	2021.05.22.	원주시	직원 사망에 따른 장례 지원	2021.05.26.	58,000	7,000

	☆☆☆	2021.05.23.	원주시	직원 사망에 따른 직원 대표 문상 및 장례지원	2021.05.27.	30,000	7,000
6	소방☆☆☆☆	2021.05.23.	원주시	직원 사망에 따른 직원 대표 문상 및 장례지원	2021.05.27.	30,000	8,000
7	소방☆☆☆☆	2022.01.25.	경기도 화성시	소방차량(지휘차) 제작 완료에 따른 인수	2022.01.27.	30,000	7,000
8	소방☆☆☆☆	2022.05.17.	고성군	상반기 구조담당자 워크숍	2022.05.30.	171,800	8,000
9	소방☆☆☆☆	2022.05.17.	고성군	상반기 구조담당자 워크숍	2022.05.30.	171,800	7,000
10	소방☆☆☆☆	2022.07.26.	횡성군	표준인사시스템 경력 등 평정 교차 점검 참석	2022.07.29.	56,200	8,000
계							**121,0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16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시행 2021. 9. 30. 인사혁신처예규]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1일당 20,000원, 일비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4]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3.여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 운임·숙박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한편 「강원도 공무원 여비조례」[시행 2019. 7. 26. 강원도조례]가 2019. 7. 26. 개정・시행되면서 숙박비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5]로 지급하고,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실비로 지급하며, 자동차 이용 시 버스운임을 적용하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공문[6]을 시달하였다.

따라서 ☆☆소방서(☆☆☆☆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출할 경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간(2020. 2.~현재)동안 출장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 “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과 같이 총 10건에 대하여 13명에게 운임비 302,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출장여비 초과지출 현황

순번	출장내역					구분	운임비(반납)
	일자	장소	목적	출장자			
				직급	성명		
1	2021.04.30.	영월군	자체점검(종합, 작동)대상 교차점검	소방☆	☆☆☆	운전자	
				소방☆	☆☆☆	동승자	10,200
2	2021.09.14.	태백시	강원도 소방학교 화재초기 인명수색 및 구조훈련 교육입교	소방☆	☆☆☆	동승자	25,000
				소방☆	☆☆☆	운전자	
3	2021.09.14.	태백시	강원도 소방학교 화재초기 인명수색 및 구조훈련 교육입교	소방☆	☆☆☆	운전자	
				소방☆	☆☆☆	동승자	25,000
				소방☆	☆☆☆	동승자	25,000
4	2021.09.14.	태백시	강원도 소방학교 화재초기 인명수색 및 구조훈련 교육입교	소방☆	☆☆☆	동승자	25,000
				소방☆	☆☆☆	동승자	25,000

5) 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박당)
제 1 호 (3급 이상)	실 비
제 2 호 (4급 이하)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6) 소방행정과-16039호(2019.7.30.)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관련 처리절차 안내”

				소방☆	☆☆☆	운전자	
5	2022.02.18.	태백시	제63회 화재대응능력 2급 실기시험 평가 응시	소방☆	☆☆☆	동승자	25,000
				소방☆	☆☆☆	운전자	
				소방☆	☆☆☆	운전자	
6	2022.05.16. ~05.17.	고성군	상반기 구조담당자 워크숍 참석	소방☆	☆☆☆	운전자	
				소방☆	☆☆☆	동승자	41,800
7	2022.05.27.	춘천시	소방용수관리시스템 개발 1차 시연회 참석	소방☆	☆☆☆	동승자	26,000
				소방☆	☆☆☆	운전자	
8	2022.09.23.	원주시	원주세브란스 외상 심포지엄 참석	소방☆	☆☆☆	동승자	18,000
				소방☆	☆☆☆	운전자	
				소방☆	☆☆☆	동승자	18,000
9	2022.08.31. ~09.01.	대구시	2022년 소방장비 중앙품평회 참석	소방☆	☆☆☆	증빙 자료 미첨부(8.31.)	20,000
10	2022.10.12. ~10.14.	제주시	☆☆소방서 모범소방공무원 문화탐방	소방☆	☆☆☆	운전자	
				소방☆	☆☆☆	동승자	18,000
계							**302,00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식비가 포함된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같은 날 10명에게 지급한 야근매식비 121,000원과 관외출장 동승자 13명에게 지급한 운임비 302,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경고·주의·시정 요구

제 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대상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괄과

관 련 자 ① ☆☆본부 ☆☆☆☆과(前 ☆☆소방서 ☆☆☆☆과) 소방☆ ☆☆☆

② ☆☆소방서 ☆☆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③ ☆☆소방서 ☆☆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

④ ☆☆소방서 ☆☆☆☆과 소방☆ ☆☆☆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대상[7]에 대하여 매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1.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누락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9조, 제25조, 제4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

---

7) 자체점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함
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함
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128호, 시행 2020. 4. 1.] 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이에 따른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8]에 대하여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여부를 파악하여 자체점검대상을 정비하여 점검대상을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건축 소방동의 현황과 자체점검 실시대상을 비교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신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해 자체점검대상에 추가하여 관리해야함에도 ☆☆☆☆ 등 12개소에 대하여 소방동의 이후 자체점검 대상에 누락된 채로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누락대상 12개소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법적처분 없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8)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건축물의 면적 및 소방시설 설치 종류에 따라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이 가장 낮은 3급 대상물부터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대상임

[표1]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대상 누락 현황

연번	용 도	대상명	연면적(㎡)	사용승인일	점검구분	비 고
1	운수시설	☆☆☆☆	2,832.46	2018-07-30	종합정밀점검	신축
2	공동주택	☆☆☆☆☆☆☆☆	3,798.28	2018-05-18	종합정밀점검	신축
3	근린생활	☆☆☆☆	2,024.67	2018-01-02	종합정밀점검	신축
4	문화집회	☆☆☆☆☆☆☆☆☆	1,729.64	2020-05-13	종합정밀점검	신축
5	복합	☆☆☆☆	1,231.59	2020-12-09	작동기능점검	신축
6	동식물	☆☆☆☆☆	10,746.32	2018-09-20	작동기능점검	신축
7	근린생활	☆☆☆☆☆ ☆☆	658.20	2018-01-03	작동기능점검	신축
8	종교	☆☆☆ ☆☆☆☆☆	1,367.53	2020-04-17	작동기능점검	신축
9	복합	☆☆☆☆ ☆☆☆☆	1,808.64	2018-08-01	작동기능점검	신축
10	공동주택	☆☆☆ ☆☆☆☆☆	1,354.00	2019-12-24	작동기능점검	신축
11	장고	☆☆☆☆☆☆☆	221.60	2018-11-16	작동기능점검	신축
12	운동시설	☆☆☆ ☆☆☆ ☆☆☆ ☆☆☆	1,394.46	2020-12-03	작동기능점검	신축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대상 처분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25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808(2020. 9. 25.)호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계산방법 변경 알림” 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723(2021. 4. 12.) “자체점검결과 보고 전산화 관련 회의 결과 및 업무처리 방법 알림“ 및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68(2022. 2. 4.)호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알림” 에 따르면 자제점검 결과보고는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배치신고를 10일 내 적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의 기산점인 배치신고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최장 제출기한(배치신고 기한 10일 +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한 7일)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 등 13개소에 대하여 배치신고일로부터 점검결과 제출일까지 제출기한 7일을 제외한 일수가 최소 1일부터 최대 167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하고, 위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대상 현황

연번	대상명	구분	자체점검 현황				
			점검자	점검일	배치신고일	결과제출일	초과일수
1	☆☆☆☆☆	작동	☆☆☆☆☆☆☆(주)	2021-07-01	2021-07-01	2021-07-14	2
2	☆☆☆☆	작동	소방안전관리자	2021-07-20	-	2021-07-30	1

연번	대상명	구분	자체점검 현황				
			점검자	점검일	배치신고일	결과제출일	초과일수
3	☆☆ 제0000☆☆	종합	㈜☆☆☆☆☆☆	2021-08-30	2021-09-01	2021-09-16	4
4	☆☆☆☆☆☆	종합	㈜☆☆☆☆☆	2021-12-02	2021-12-08	2021-12-23	4
5	☆☆☆☆☆☆	작동	㈜☆☆☆☆	2022-01-25	2022-02-04	2022-10-20	167
6	☆☆☆☆☆	작동	☆☆☆☆	2022-04-14	2022-04-25	2022-05-04	1
7	☆☆☆☆☆☆☆☆	작동	㈜☆☆☆☆	2022-06-16	2022-06-27	2022-07-06	1
8	☆☆☆☆	작동	☆☆☆☆㈜	2022-06-23	2022-07-04	2022-07-13	1
9	☆☆☆☆☆☆☆☆☆	작동	☆☆☆☆☆☆☆☆	2022-07-20	2022-08-01	2022-08-09	1
10	☆☆☆☆☆☆	종합	㈜☆☆☆☆	2022-08-10	2022-08-22	2022-08-30	1
11	☆☆☆☆☆	작동	㈜☆☆☆☆	2022-08-31	2022-09-13	2022-09-20	1
12	☆☆☆	작동	㈜☆☆☆☆	2022-09-14	2022-09-26	2022-10-05	1
13	☆☆☆☆☆☆	작동	㈜☆☆☆☆	2022-09-22	2022-10-04	2022-10-13	1

주) 초과일수 : 제출기한(7일)을 제외한 초과일수 산정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의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장기간 보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8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신고를 하였는지 면밀히 검토 후 접수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0 ~ 00. 0.) 중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기한 초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 등 49개소에 대하여 점검일로부터 배치신고일까지 배치신고기한 10일을 제외한 일수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표3]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신고기한 초과대상 현황

연번	대상명	구분	자체점검 현황				
			점검자	점검일	배치신고일	결과제출일	초과일수
1	☆☆☆☆☆	종합	㈜☆☆☆☆	2021-11-24	2021-12-06	2021-12-10	2
2	☆☆☆☆	종합	㈜☆☆☆☆☆	2021-11-18	2021-11-29	2021-12-01	1
3	☆☆☆☆☆☆☆☆	종합	☆☆☆☆	2021-08-05	2021-08-16	2021-08-18	1
4	☆☆☆☆☆☆	종합	☆☆☆☆	2021-08-05	2021-08-16	2021-08-20	1
5	☆☆☆☆ (☆☆☆☆☆☆)	종합	㈜☆☆☆☆☆	2021-12-02	2021-12-13	2021-12-17	1
6	☆☆☆☆☆	종합	㈜☆☆☆☆	2022-01-12	2022-01-24	2022-02-07	2
7	☆☆☆☆☆☆☆☆	종합	☆☆☆☆☆☆☆☆	2022-08-08	2022-08-19	2022-08-25	1
8	☆☆☆☆	종합	☆☆☆☆☆☆	2022-08-18	2022-08-29	2022-09-02	1
9	☆☆☆☆☆☆	종합	㈜☆☆☆☆	2022-09-01	2022-09-13	2022-09-16	2
10	☆☆☆ ☆☆☆☆☆☆☆	종합	(주)☆☆☆☆☆	2022-09-05	2022-09-16	2022-09-22	1
11	☆☆☆☆☆☆	종합	☆☆☆☆ ☆☆☆☆	2022-08-10	2022-08-22	2022-08-30	2
12	☆☆☆☆☆☆ ☆☆☆☆☆	종합	㈜☆☆☆☆☆	2022-01-19	2022-02-03	2022-02-07	5
13	☆☆ ☆0000☆☆	종합	㈜☆☆☆☆☆☆	2022-08-30	2022-09-13	2022-09-15	4
14	☆☆☆☆☆☆	종합	☆☆☆☆	2022-09-01	2022-09-13	2022-09-20	2
15	☆☆☆ ☆☆☆☆☆☆☆☆	종합	☆☆☆☆☆	2022-09-05	2022-09-16	2022-09-23	1
16	☆☆☆☆☆☆	작동	☆☆☆☆	2022-02-15	2022-02-26	2022-03-07	1
17	☆☆☆☆☆	작동	㈜☆☆☆☆	2022-05-18	2022-05-30	2022-06-08	2

연번	대상명	구분	자체점검 현황				
			점검자	점검일	배치신고일	결과제출일	초과일수
18	☆☆☆☆☆☆☆☆☆	작동	☆☆☆☆☆☆☆☆	2022-07-20	2022-08-01	2022-08-09	2
19	☆☆☆☆☆☆☆☆	작동	㈜☆☆☆☆	2022-06-16	2022-06-27	2022-07-06	1
20	☆☆☆☆☆☆	작동	㈜☆☆☆☆☆☆☆	2022-07-14	2022-07-25	2022-07-29	1
21	☆☆☆☆	작동	☆☆☆☆☆㈜	2022-06-23	2022-07-04	2022-07-13	1
22	☆☆☆☆☆☆	작동	㈜☆☆☆☆☆	2022-01-19	2022-02-03	2022-02-08	5
23	☆☆☆☆☆	작동	☆☆☆☆	2022-08-31	2022-09-13	2022-09-20	3
24	☆☆☆000☆☆	작동	㈜☆☆☆☆	2022-02-16	2022-02-28	2022-03-07	2
25	☆☆☆☆☆ (구-☆☆☆☆☆☆)	작동	㈜☆☆☆☆☆	2022-08-31	2022-09-13	2022-09-14	3
26	☆☆☆☆☆☆☆	작동	㈜☆☆☆☆☆	2021-12-02	2021-12-13	2021-12-14	1
27	☆☆☆☆☆☆☆ (구 ☆☆☆)	작동	㈜☆☆☆☆☆	2021-12-02	2021-12-13	2021-12-14	1
28	☆☆☆☆ (☆☆☆☆☆)	작동	㈜☆☆☆☆☆	2021-12-02	2021-12-13	2021-12-14	1
29	☆☆☆☆☆☆	작동	㈜☆☆☆☆	2021-07-22	2021-08-02	2021-08-04	1
30	☆☆☆☆☆☆☆	작동	㈜☆☆☆☆	2021-11-25	2021-12-06	2021-12-15	1
31	☆☆☆	작동	㈜☆☆☆☆	2021-09-30	2021-10-12	2021-10-18	2
32	☆☆☆☆☆	작동	㈜☆☆☆☆	2021-11-25	2021-12-06	2021-12-15	1
33	☆☆☆☆☆☆	작동	㈜☆☆☆☆	2021-09-27	2021-10-08	2021-10-15	1
34	☆☆☆☆ (구-☆☆☆☆☆)	작동	㈜☆☆☆☆	2021-07-22	2021-08-02	2021-08-03	1
35	☆☆☆☆☆☆	작동	㈜☆☆☆☆☆	2021-11-18	2021-11-29	2021-12-02	1
36	☆☆☆☆ ☆☆☆☆☆	작동	㈜☆☆☆☆☆	2021-12-02	2021-12-13	2021-12-16	1
37	☆☆☆☆☆☆ ☆☆☆☆	작동	㈜☆☆☆☆	2021-12-06	2021-12-17	2021-12-23	1
38	☆☆☆☆☆ ☆☆☆☆☆☆	작동	☆☆☆☆	2021-09-03	2021-09-20	2021-09-23	7
39	☆☆☆☆☆☆☆☆	작동	㈜☆☆☆☆	2021-09-16	2021-09-27	2021-10-01	1
40	☆☆☆☆☆☆ (☆☆☆☆☆)	작동	㈜☆☆☆☆☆	2021-12-02	2021-12-13	2021-12-14	1
41	☆☆☆	작동	㈜☆☆☆☆	2022-09-14	2022-09-26	2022-10-05	2
42	☆☆☆☆☆☆ (구-☆☆☆)	작동	㈜☆☆☆☆☆	2022-01-27	2022-02-07	2022-02-15	1
43	☆☆☆☆☆	작동	☆☆☆☆	2022-04-14	2022-04-25	2022-05-04	1
44	☆☆☆☆☆☆☆☆	작동	㈜☆☆☆☆	2022-05-18	2022-05-30	2022-06-07	2

연번	대상명	구분	자체점검 현황				
			점검자	점검일	배치신고일	결과제출일	초과일수
45	☆☆☆☆☆☆☆☆☆	작동	☆☆☆☆☆☆☆☆☆	2022-07-21	2022-08-01	2022-08-02	1
46	☆☆☆☆☆☆☆☆☆	작동	☆☆☆☆☆☆☆☆☆	2022-02-28	2022-03-14	2022-03-15	4
47	☆☆☆☆☆☆☆☆	작동	☆☆☆☆	2022-09-22	2022-10-04	2022-10-07	2
48	☆☆☆☆☆☆☆☆☆	작동	☆☆☆☆☆☆☆☆☆	2022-06-15	2022-06-26	2022-06-28	1
49	☆☆☆☆☆☆	작동	☆☆☆☆	2022-09-22	2022-10-04	2022-10-13	2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본부 ☆☆☆☆과(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0년 예방소방행정 통계 자료조사 업무담당자로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파악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를 해야 함에도 2020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 ☆☆☆☆☆☆☆☆(☆☆), ☆☆☆☆ 3개소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 ☆☆☆☆☆ ☆☆, ☆☆☆☆ ☆☆☆☆, ☆☆☆ ☆☆☆☆☆, ☆☆☆☆☆☆☆ 5개소를 포함한 8개소에 대하여 소방동의 이후 자체점검 대상에 누락된 채로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누락대상 8개소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법적처분 없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1년 예방소방행정 통계 자료조사 업무담당자로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파악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를 해야 함에도 2021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 1개소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 ☆☆, ☆☆☆ ☆☆☆☆☆, ☆☆☆☆

☆☆☆☆, ☆☆☆ ☆☆☆☆☆, ☆☆☆☆☆☆☆, ☆☆☆ ☆☆☆ ☆☆☆ ☆☆☆ 6개소를 포함한 7개소에 대하여 소방동의 이후 자체점검 대상에 누락된 채로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누락대상 7개소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이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법적처분 없이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소방시설법」제2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소방)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서 ☆☆119안전센터(前 ☆☆소방서 ☆☆☆☆과) 소방☆ ☆☆☆은 2021년 7월 5일부터 2022년 7월 10일까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담당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를 했어야 함에도 2021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 ☆0000☆☆ ☆☆☆☆☆, ☆☆☆☆☆☆ 2개소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 ☆☆☆☆, ☆☆☆☆☆☆, ☆☆☆☆☆, ☆☆☆☆☆☆☆☆ 5개소를 포함한 7개소에 대하여 배치신고일로부터 점검결과 제출일까지 제출기한 7일을 제외한 일수가 최소 1일부터 최대 167일이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하고,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 ☆☆☆☆과 소방☆ ☆☆☆는 2022년 7월 11일부터 2022년 10월 31

일까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담당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를 했어야 함에도 2022년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 1개소 및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 ☆☆☆☆☆☆☆☆☆, ☆☆☆☆☆, ☆☆☆, ☆☆☆☆☆☆ 5개소를 포함한 6개소에 대하여 배치신고일로부터 점검결과 제출일까지 제출기한 7일을 제외한 일수가 1일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하고,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소방시설법」제2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3호,「(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경고] 예방소방행정 통계 자료조사 업무담당자로서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파악하여 자체점검 대상에 추가하여 관리를 해야 함에도 자체점검 대상에 누락된 채로 관리하는 등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에 법적처분 없이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소방☆ ☆☆☆과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담당자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점검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를 했어야 함에도 배치신고일로부터 점검결과 제출일까지 제출기한 7일을 제외한 일수가 최소 1일부터 최대 167일 초과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접수하고, 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방☆ ☆☆☆, 소방☆☆☆☆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사용승인일 이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 등 12개소 및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한 ☆☆☆☆☆ 등 13개소 총 25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부서주의·시정 요구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각 119안전센터

내 용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해임 등에 관한 민원 업무를 하고 있다.

[표1]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합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5,281	-	20	285	192	4,784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처리 소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20조 및 53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일정 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4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고,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임 연기 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 확인, 선임 연기 및 선임유예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을

---

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 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하여야 하나 ☆☆☆☆☆ ☆☆☆ 등 2개소는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을 초과하여 선임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처리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소유주	안전관리자	전임자 해임일	선임일	신고일	위반사항
1	☆☆☆☆☆ ☆☆☆(☆☆)	㈜☆☆	☆☆☆	2020-04-27	2020-05-01	2020-06-05	14일 이내 미신고
2	☆☆☆☆☆☆☆☆☆	☆☆☆☆ ☆☆☆☆	☆☆☆	2021-02-19	2021-02-19	2021-03-12	14일 이내 미신고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미발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20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일정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되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10]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4조에 따르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0)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대행가능)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위의 업무 중 3번과 5번 업무만 대행 가능(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참조)

따라서 ☆☆소방서(119안전센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한 전체 50건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미발급 현황

연번	대 상 명	선임신고일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유무
1	(주)☆☆☆☆☆☆☆	2021-03-15	☆☆☆☆☆☆☆(주)	×
2	☆☆☆☆ ☆☆☆☆☆	2022-10-17	㈜☆☆☆☆☆	×
3	☆☆☆☆☆☆	2020-10-30	㈜☆☆☆☆☆☆☆☆☆	×
4	☆☆☆☆☆	2022-02-10	㈜☆☆☆☆☆☆☆☆☆	×
5	☆☆☆☆☆	2021-01-25	☆☆☆☆ ☆☆	×
6	☆☆☆☆☆	2021-05-24	☆☆☆☆ ☆☆☆☆	×
7	☆☆☆☆☆(☆☆)	2020-02-24	㈜☆☆☆☆☆☆☆☆☆	×
8	☆☆☆☆(☆☆☆☆☆)	2020-08-05	㈜☆☆☆☆☆☆☆☆☆	×
9	☆☆☆☆☆☆☆☆☆	2021-03-12	㈜☆☆☆☆☆☆☆☆☆	×
10	☆☆☆☆	2022-02-15	㈜☆☆☆☆☆	×
11	☆☆☆☆☆☆☆☆	2022-05-23	㈜☆☆☆☆☆☆☆☆☆	×
12	☆☆☆☆☆☆☆☆☆	2020-10-20	☆☆☆☆☆☆ ☆☆☆☆	×
13	☆☆☆☆ ☆☆☆☆☆☆☆☆	2020-06-25	㈜☆☆☆☆☆☆☆☆☆	×
14	☆☆☆☆ ☆☆☆☆☆	2022-09-19	☆☆☆☆☆☆☆(주)	×
15	☆☆☆☆	2021-01-15	㈜☆☆☆☆☆	×

연번	대 상 명	선임신고일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유무
16	☆☆☆☆☆	2021-05-03	㈜☆☆☆☆☆	×
17	☆☆ ☆☆ ☆☆☆☆☆	2021-11-25	☆☆☆☆☆☆☆	×
18	☆☆☆☆☆☆	2022-05-30	㈜☆☆☆☆☆	×
19	☆☆☆☆☆	2022-09-20	㈜☆☆☆☆☆	×
20	☆☆☆☆☆	2022-09-28	☆☆☆☆ ☆☆☆☆	×
21	☆☆☆☆☆☆	2020-11-27	㈜☆☆☆☆☆☆☆☆☆	×
22	☆☆☆☆☆	2022-07-04	☆☆☆☆ ☆☆☆☆	×
23	☆☆☆☆☆	2021-08-31	☆☆☆☆ ☆☆☆☆	×
24	☆☆☆☆☆☆☆	2020-11-27	㈜☆☆☆☆☆☆☆☆☆	×
25	☆☆☆☆☆☆	2022-08-25	☆☆☆☆☆☆☆(주)	×
26	☆☆☆☆☆☆☆☆	2022-02-10	☆☆☆☆☆☆☆(주)	×
27	☆☆☆☆☆☆☆☆☆☆☆	2021-06-04	☆☆☆☆ ☆☆	×
28	☆☆☆ ☆☆☆☆☆☆	2021-02-26	㈜☆☆☆☆☆☆☆☆☆	×
29	☆☆☆☆ ☆☆☆	2021-10-01	㈜☆☆	×
30	㈜☆☆☆☆	2021-04-15	☆☆☆☆☆☆☆(주)	×
31	☆☆☆☆☆	2020-04-17	☆☆☆☆ ☆☆☆☆	×
32	☆☆☆ ☆☆☆ ☆☆	2020-12-08	㈜☆☆	×
33	☆☆☆☆☆	2020-07-01	㈜☆☆☆☆☆☆☆☆☆	×
34	☆☆☆☆ ☆☆☆☆☆	2022-11-07	☆☆☆☆ ☆☆☆☆	×
35	☆☆☆☆☆☆☆	2021-04-29	㈜☆☆☆☆☆	×
36	☆☆☆☆☆☆ ☆☆☆☆☆	2022-07-20	☆☆☆☆☆☆☆(주)	×
37	☆☆☆ ☆☆☆	2021-04-01	☆☆☆☆☆☆☆(주)	×
38	☆☆☆☆☆☆☆☆	2021-04-30	㈜☆☆☆☆☆☆☆☆☆	×
39	☆☆☆☆ ☆☆ ☆☆☆☆	2020-09-21	㈜☆☆	×
40	㈜☆☆☆ ☆☆☆☆	2022-02-10	㈜☆☆☆☆	×
41	☆☆☆ ☆☆	2022-01-03	☆☆☆☆☆☆☆(주)	×
42	☆☆☆☆☆☆☆	2022-08-26	☆☆☆☆ ☆☆☆☆	×

연번	대 상 명	선임신고일	대행업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발급 유무
43	☆☆☆☆☆	2020-12-07	㈜☆☆☆☆	×
44	☆☆☆☆☆	2021-11-13	㈜☆☆	×
45	☆☆☆☆☆	2020-10-29	㈜☆☆	×
46	☆☆☆☆	2020-05-28	☆☆☆☆☆☆☆(주)	×
47	☆☆☆ 000 ☆☆	2022-09-29	☆☆☆☆ ☆☆☆☆	×
48	☆☆☆☆000	2021-02-16	㈜☆☆☆☆	×
49	☆☆☆☆☆☆☆	2021-02-22	☆☆☆☆☆☆☆(주)	×
50	☆☆☆☆☆	2021-11-16	㈜☆☆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 시행 2016. 1. 21.]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11]을

11)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청훈령 제128호, 시행 2020. 4. 1.]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직위 선임을 한 후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했어야 하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 등에 해당하는지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직위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17개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표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직위	자격여부	직위선임 후 교육일자
1	☆☆☆☆☆	☆☆☆	2020-06-30	☆☆과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1-01-20
2	☆☆☆☆☆	☆☆☆	2020-07-18	☆☆팀장	자격증	2022-10-21
3	☆☆☆☆☆☆☆	☆☆☆	2021-03-19	☆☆팀장	자격증	-
4	☆☆☆☆☆☆ ☆☆☆☆	☆☆☆	2022-01-05	차장	자격증	2022-09-20
5	☆☆☆☆☆☆ ☆☆☆☆☆	☆☆☆	2021-06-01	지방행정주사보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6-25
6	☆☆☆ ☆☆☆ ☆☆☆ ☆☆☆	☆☆☆	2021-08-18	팀장	건축기사	2022-02-21
7	☆☆☆☆ ☆☆☆	☆☆☆	2021-05-18	☆☆소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1-12-15
8	☆☆☆☆☆☆	☆☆☆	2021-07-01	☆☆실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10-17
9	☆☆☆☆☆☆☆	☆☆☆	2020-09-01	☆☆실장	소방설비산업기사	2021-03-23
10	☆☆☆☆☆☆☆☆☆	☆☆☆	2020-07-15	행정주사	강습수료(공공기관)	2021-12-08
11	☆☆0000☆☆	☆☆☆	2021-08-06	☆☆담당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3-05
12	☆☆☆☆☆☆☆☆☆	☆☆☆	2021-03-19	총무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7-19
13	☆☆☆☆☆ ☆☆☆☆☆☆☆	☆☆☆	2020-11-25	☆☆팀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1-11-04
14	☆☆☆☆☆☆	☆☆☆	2020-07-06	담당	전기기사	2021-08-31
15	☆☆☆☆☆☆☆ ☆☆☆☆☆☆	☆☆☆	2021-01-01	팀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8-16
16	☆☆☆☆☆☆	☆☆☆	2021-07-13	행정주사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8-16
17	☆☆☆☆☆☆	☆☆☆	2021-07-01	☆☆실장	강습수료(공공기관)	2022-03-04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표5]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 15개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1개소 총 16개소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관리·감독과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적 직위 부적정 현황

연번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안전관리자 직위	자격여부	비고
1	☆☆☆ ☆☆☆☆☆☆	☆☆☆	2020-12-02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2	☆☆☆☆ ☆☆☆☆	☆☆☆	2021-07-01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3	☆☆☆ ☆☆☆☆☆☆	☆☆☆	2021-11-19	행정9급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4	☆☆ ☆☆☆☆☆☆	☆☆☆	2021-03-22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5	☆☆☆ ☆☆☆ ☆☆☆☆☆☆	☆☆☆	2021-07-01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6	☆☆☆☆☆	☆☆☆	2021-07-01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7	☆☆☆☆☆☆	☆☆☆	2022-01-01	지방행정주사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8	☆☆☆☆ ☆☆☆☆☆☆	☆☆☆	2021-06-01	지방행정주사보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9	☆☆☆☆ ☆☆☆☆☆	☆☆☆	2021-12-01	주무관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0	☆☆☆ ☆☆☆☆☆☆	☆☆☆	2021-04-08	행정주사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1	☆☆☆☆ ☆☆☆☆	☆☆☆	2020-08-06	부주임	소방설비 기사(전기)	☆☆안전센터
12	☆☆☆☆☆☆	☆☆☆	2021-07-13	행정주사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3	☆☆☆☆☆☆	☆☆☆	2022-01-28	주임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4	☆☆☆☆ ☆☆☆	☆☆☆	2022-07-26	청원경찰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5	☆☆☆☆☆☆	☆☆☆	2020-02-06	공무직	강습수료 (공공기관)	☆☆안전센터
16	☆☆☆ ☆☆☆☆☆☆	☆☆☆	2019-02-11	과장	2급소방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적정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부서주의] 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직 직위에 있지 않은 15개소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1개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춘 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주시고,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시정]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연하여 선임신고한 ☆☆☆☆☆☆☆☆, ☆☆☆☆☆☆☆☆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시정(회수) 요구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 [표1]과 같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남성대		지역대		여성대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대수	인원
2020년	17	432	8	227	1	14	8	191
2021년	17	404	8	210	1	13	8	181
2022년	17	407	8	212	1	10	8	185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간 미달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제6조,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대원에게는 기본교육[12]으로 36시간을,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에게는 연간 12시간의 전문교육[13]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2]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2년 내에 기본교육을 1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문교육은 연간 6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대원을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2]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이수 최소시간

□ **개별 이수교육 시간의 50%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
○ 신규대원: 임명된 후 2년 이내 기본교육 36시간 → **기간 내 18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 기본교육 이수 대원(전담대 제외): 전문교육 연 12시간 → **연간 6시간 미만일 경우 해임사유**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임기준이 되는 교육이수 최소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해임사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의용소방대 기본교육(36시간)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12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원이 기본교육은 82명, 전문교육은 347명으로 확인되었고,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이 해임기준(기본교육 18시간, 전문교육 6시간)인 45명에 대하여 해임처리 23명, 사직처리 16명을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 6명에 대하여 해임을 하여야 하는데도

12)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치하지 않은 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3]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 현황

(단위: 명)

의소대명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기본교육 이수시간		전문교육 이수시간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미달	해임대상
총계	82	16	347	29	11	4	145	11	41	8	202	18	30	4		
☆☆남대	14		44	1	2		17		5		27	1	7			
☆☆여대	8	4	27	2			17		7	4	10	2	1			
☆☆남대	5	2	36	7	2	2	18	3	3		18	4				
☆☆여대	6	3	12	1	1		3	1	2	1	9		3	2		
☆☆남대	4	1	31	2	1	1	15	1	3		16	1				
☆☆여대	3	1	22	1			10	1	3	1	12					
☆☆남대	4		24	5			10	1	3		14	4	1			
☆☆여대			11	1			4				7	1				
☆☆지역대			17	4			7	1			10	3				
☆☆남대	5	1	21				8		3		13		2	1		
☆☆여대	11	2	6		4	1			2	1	6		5			
☆☆남대	3		29	5	1		10	3	2		19	2				
☆☆여대	3		12				4		1		8		2			
☆☆남대	8	2	28				11		4	1	17		4	1		
☆☆여대	2		7				4		2		3					
☆☆남대	3		17				6				11		3			
☆☆여대	3		3				1		1		2		2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의용소방대원 중 일부가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할 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의 보조 활동이 부실해 질 우려가 있다.

2.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제18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신규 임명된 자에 대해서는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등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난・산악구조 등에 관한 전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 2019. 11. 8.]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업무 등 제7조[14]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서(☆☆☆☆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기록부를 제출받아 교육훈련 여비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활동기록부를 제출받아 의용소방대 활동시간을 확인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2000. 00. 00. ~ 00. 0.) 중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4]와 같이 ☆☆남성의용소방대 ☆☆☆ 외 12명의 경우 소집시간이 중복되고, ☆☆여성의용소방대 ☆☆☆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간과 소집 시간이 중복 되는 등 총 11건 13명에게 지급 신청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를 중복 지급하여 의용소방대 수당 및 여비 지급업무를

14)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4]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및 교육훈련 여비 중복지급 현황

연번	의소대명	교육훈련 일시	훈련내용	소집명령 일시	활동내용	성명	비고
1	☆☆남대			2020-12-26 21:48~02:49	창고화재 출동	☆☆☆ ☆☆☆	각11,800원*2h
				2020-12-26 20:00~23:00	겨울철 야간대기근무		
2	☆☆여대			2021-12-09 13:00~15:00	산불예방 캠페인	☆☆☆	11,900원*2h
				2021-12-09 13:00~15:00	연합회 산불예방 캠페인		
3	☆☆남대			2021-12-10 13:00~15:00	연합회 산불예방 캠페인	☆☆☆	11,900원*1h
				2021-12-10 12:00~14:00	산림화재 예방순찰		
4	☆☆여대			2021-11-23 10:00~11:00	급수지원	☆☆☆	11,900원*1h
				2021-11-23 10:00~12:00	산불예방 캠페인		
5	☆☆남대			2021-03-05 14:00~16:00	코로나19 방역활동	☆☆☆	11,900원*2h
				2021-03-05 14:00~16:00	해빙기 순찰활동		
6	☆☆남대			2021-04-23 14:34~16:38	화재출동	☆☆☆	11,900원*2h
				2021-04-23 14:00~16:00	산불예방순찰		
7	☆☆남대			2022-04-20 13:13~19:13	화재출동	☆☆☆ ☆☆☆	각12,100원*2h
				2022-04-20 14:00~16:00	산불화재 예방순찰		
8	☆☆여대			2022-04-20 13:13~19:13	코로나19 방역활동	☆☆☆ ☆☆☆	각12,100원*2h
				2022-04-20 14:00~16:00	산불화재 예방순찰		
9	☆☆여대			2022-03-17 14:00~16:00	코로나19 방역활동	☆☆☆	12,100원*2h
				2022-03-17 14:00~16:00	화재예방 캠페인		
10	☆☆여대			2022-03-24 14:00~16:00	코로나19 방역활동	☆☆☆	12,100원*2h
				2022-03-24 14:00~16:00	화재예방 캠페인		
11	☆☆여대	2022-08-05 10:00~12:00	강사강의 경연대회 자제훈련	2022-08-05 09:00~18:00	실종자 수색	☆☆☆	10,000원

자료 :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회수)] 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간 기준미달로 해임처분 등 조치하지 않은 6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교육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297,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